

- 9) 면직, 해임,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퇴직 기간
- 10)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,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기간

**4****호봉의 정정**

- 가. 대상 및 요건 :**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자
- 나. 시기 :**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
- 다. 호봉 정정 시행자 :**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
- 라. 방법:**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
  -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
  -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 계산